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회의 회의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항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법 제8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뢰 및 법 제8조 제1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뢰의 승인
2. 법 제8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조치
3.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해임 또는 징계 의결의 요구
4. 법 제23조 내지 법 제29조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고발

③ 위원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심사, 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
2.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사항
3. 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사, 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제7조(위원회의 간사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 조사등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사무 직원을 둘수 있다.

② 간사는 서산군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제8조(수당등) 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의 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산군지방공무원여비 조례중개정조례안

서산군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별표”중 “여비지급구분표 및 여비정액표”를 각각 별지와 같이한다.

제5조 “별표”중 “이전비정액표”를 별지와 같이한다.

제6조의 1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근무지내 출장의 경우에는 제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출장여행시간이 4시간 이상인자에 대하여는 10,000원을, 4시간 미만인자에 대하여는 5,000원을 지급한다.

다만, 관용차량 관리규정에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차량배정자와 같은 규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차량유지비를 받는자에 대하여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관용차량을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5,000원을 감하여 지급한다.

(별표2의 2) 근무지내 출장시 여비지급 구분표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여비지급구분표

구 분	해 당 공 무 원
제 1 호	1. 차관. 처의 차장, 특1급의 교직공무원 기타 차관상당 봉급을 받는 공무원 2. 차관보, 1급공무원 특2급의 교직공무원,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규정 (이하 이표에서 "임용규정" 이라 한다) [별표 2] 제1호 가목의 연구관 차관보 또는 1급 상당봉급을 받는 공무원
제 2 호	1. 2급 및 3급공무원, 지방노동위원회, 상임위원, 임용규정 [별표 2], 제1호 나목 및 제2호 가목의 연구관 임용규정 [별표 2의 2], 제1호 가목 및 제2호 가목의 지도관, 기타 2급 또는 3급 상당봉급을 받는 공무원
제 3 호	1. 4급 및 5급공무원, 전문직공무원규정 별표의 가 및 나에 해당하는 전문직 공무원, 임용규정 (별표 2) 제1호 다목 및 라목, 제2호 나목 다목 및 제3호의 연구관, 임용규정 (별표 2의 2) 제1호 나목 및 다목, 제2호 나목 및 다목 및 제3호의 지도관 기타 4급 또는 5급 상당 봉급을 받는 공무원
제 4 호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무원 (공무원보수규정의 적용을 받는 자를 포함한다)

[별표 2]

여 비 정 액 표

(단위 : 원)

등 급	철 도 운 입	선 박 운 입	항 공 운 입	자 동 차 운 입	현 교 통 비 (1일당)	숙 박 료 (1야당)	식 비 (1일당)	식 탁 료 1야당
특 호	1등급	1 등 정액	정 액	정 액	6,500	갑지 17,000 을지 15,000	11,000 9,500	2,000
제1호	1등급	2 등 정액	정 액	정 액	6,500	갑지 17,000 을지 15,000	11,000 9,500	800
제2호	1등급	2 등 정액	정 액	정 액	6,500	갑지 17,000 을지 15,000	11,000 9,500	800
제3호	2등급	2 등 정액	정 액	정 액	6,500	갑지 14,000 을지 11,500	10,500 9,000	800
제4호	3등급	2 등 정액	정 액	정 액	6,500	갑지 11,500 을지 9,500	10,000 8,500	800

- 비고 : 1. “갑지”는 서울특별시, 직할시, 도청소재지 및 기타 시지역으로, “을지”는 갑지외의 지역으로 한다.
2. 자동차운입 및 항공운입의 정액은 교통부장관의 인가 요금을 기준으로 하되, 할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할인 요금을 지급한다.
3. 철도운입구분표중 1등급은 새마을호 특실, 2등급은 새마을호 보통실, 3등급은 무궁화호 보통실 또는 통일호 특실을 말하며, 당해 철도운입 구분표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노선의 열차 최고등급에 해당하는 철도운입을 지급한다.
4. 수로 여행시 페리호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특호 및 제1호 해당자에 대하여는 특등, 기타의 자에 대하여는 1등 운임을 지급하되, 운입의 정액은 해운항만청장의 인가요금을 기준으로 한다.

[별표 3]

이 전 료 정 액 표

(단위 : 원)

구분 등급	50 킬로미 터까지	100 킬로미 터까지	150 킬로미 터까지	200 킬로미 터까지	250 킬로미 터까지	300 킬로미 터까지	350 킬로미 터까지	400 킬로미 터까지	450 킬로미 터까지	500 킬로미 터까지
제 1 호 해당자	2, 650	3, 200	3, 740	4, 290	4, 830	5, 380	5, 920	6, 470	7, 010	7, 560
제 2 호 해당자	1, 900	2, 400	2, 810	3, 220	3, 630	4, 040	4, 450	4, 860	5, 270	5, 680
제 3 호 해당자	1, 990	2, 400	2, 810	3, 220	3, 630	4, 040	4, 450	4, 860	5, 270	5, 680
제 4 호 해당자	1, 660	2, 000	2, 340	2, 680	3, 020	3, 360	3, 700	4, 040	4, 380	4, 720

서산군공중보건을위한장학 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서산군공중보건을위한장학금지급조례중 다
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2항중 “면허가 취소될때” 다음에 “또
는 성실히 공중보건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
거나 본인이 희망할시”를 삽입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장학금의반납) ① (생 략) 1-2 (생 략) ②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의무 이행 기간 중에 있는 자가 의료법 위 반 등의 사유로 면허가 취소될때 에는 미이행 된 잔여기간에 해당 하는 장학금액을 제1항에 따라 반 납해야 한다.	제9조(장학금의반납) ① (현행과 같음) 1-2(현행과 같음) ②..... 또는 성실히 공중보건업무에 종 사하지 아니하거나 본인이 희망할시